



## 식품위생법 시행규칙

[시행 2018. 6. 28.] [총리령 제1472호, 2018. 6. 28., 일부개정]

식품의약품안전처 (식품안전정책과-법령 제·개정 사항), 043-719-2011, 2016 식품의약품안전처 (식품안전정책과-식품관련 법령 유권해석), 043-719-2040, 2017 식품의약품안전처 (식품안전표시인증과-HACCP 업무), 043-719-2854, 2867 식품의약품안전처 (식품안전표시인증과-표시·광고 업무), 043-719-2853, 2868 식품의약품안전처 (식품기준과-식품의 기준 및 규격), 043-719-2414, 2417 식품의약품안전처 (첨가물기준과-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), 043-719-2505, 2517 식품의약품안전처 (첨가물기준과-기구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), 043-719-2502, 2506

제62조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)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"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. <개정 2010. 3. 19., 2013. 3. 23., 2014. 5. 9., 2016. 4. 19., 2017. 12. 29.>

- 1.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・어육소시지
- 2.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
- 3. 냉동식품 중 피자류·만두류·면류
- 4. 과자류,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・캔디류・빵류・떡류
- 5. 빙과류 중 빙과
- 6. 음료류[다류(茶類) 및 커피류는 제외한다]
- 7. 레토르트식품
- 8.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(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,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한다)
- 9.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
- 10.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, 전분,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·숙면·건면
- 11. 특수용도식품
- 12. 즉석섭취 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
- 12의2. 즉석섭취 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
- 13. 식품제조·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·가 공하는 식품
-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·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8. 18.>

## [제목개정 2015. 8. 18.]

[시행일] 제62조제1항제1호(어육소시지만 해당한다), 제4호(과자·캔디류만 해당한다), 제6호(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)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

- 1.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고,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·가공하는 식품: 2014년 12월 1일
- 2.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,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영업소(이 항제1호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)에서 제조·가공하는 식품: 2016년 12월 1일

- 3.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,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영업소(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소 및 제6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영업 소는 제외한다)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: 2018년 12월 1일. 다만, 제62조제1항제8호의 개 정규정 중 떡류의 경우로서 해당 떡류의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, 종업원 수가 10 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떡류: 2017년 12월 1일
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(제62조제1항제13호의 개 정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)에서 제조・가공하는 식품: 2020년 12월 1일

## [시행일] 제62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

- 1. 2014년의 종업원 수가 2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・가공하는 순대: 2016년 12월 1일
- 2.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순대: 2017년 12월 1일
- 제63조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)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 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 용업소 인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 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(전자문서를 포함 한다)를 첨부하여 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(이하 "인증기관"이 라 한다)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4. 7., 2015. 8. 18.>
-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15. 8. 18.>
- 1. 선행요건관리기준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미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말한다)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
- 2.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
-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 소로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. <개정 2015.8.18.>
- ④ 법 제4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사항 중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(이하 "중요관리점"이라 한다)을 변경하거나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변경신청서(전자문 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인증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8. 18., 2017. 1. 4.>
- 1. 별지 제53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
- 2. 중요관리점의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
-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으면 서류검토 또는 현장실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8. 18.>
-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5항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<신설 2015. 8. 18., 2017. 1. 4.> [제목개정 2015. 8. 18.]

제64조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) ① 법 제48조제

5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 제48조제8항 및 이 규칙 제66조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을 받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의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면제한다. <개정 2012. 1. 17., 2013.

- 3. 23., 2015. 8. 18., 2017. 1. 4.>
- 1.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신규 교육훈련
- 2.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교육훈련
- 3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어 영업자 및 종업원 에게 명하는 교육훈련
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5.

## 8. 18.>

- 1.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
- 2. 식품위생제도 및 식품위생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
- 3.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
- 4.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조사ㆍ평가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
- 5.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
-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신규 교육훈련: 영업자의 경우 2시간 이내, 종업원의 경우 16시간 이내
- 2. 정기교육훈련: 4시간 이내
- 3.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: 8시간 이내
-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8. 18.>
- 1. 삭제 <2017. 1. 4.>
-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
- 3.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, 단체 및 업체
- ⑤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등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비(實費) 수준으로 교육훈련기관 등의 장이 결정한다.
- 1. 강사수당
- 2. 교육교재 편찬 비용
- 3.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 실습에 드는 비용
- 4.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
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별 교육시간, 실시방법,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3. 3. 23.> [제목개정 2015. 8. 18.]
- 제65조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제6 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8. 18.>
  - 1.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에 관한 전문적 기술과 교육
  - 2. 위해요소 분석 등에 필요한 검사
  - 3.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자문 비용
  - 4.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시설·설비 등 개수·보수 비용
  - 5. 교육훈련 비용

[제목개정 2015. 8. 18.]

- 제66조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·평가)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 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·평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8. 18.>
  - ② 제1항에 따른 조사·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5. 8. 18.>
  - 1.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제조·가공·조리 및 유통에 따른 위해요소분석, 중요관리점 결정 등이 포함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
  - 2. 제64조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
  - ③ 그 밖에 조사·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「제목개정 2015. 8. 18.〕

- 제67조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) ① 법 제48조제8항제4호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0. 3. 19., 2013. 3. 23., 2015. 8. 18.>
  - 1. 법 제4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가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·가공한 경우
  - 2.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
  - 3. 삭제 <2017. 1. 4.>
- ②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. <개정 2015. 8. 18.>

[제목개정 2015. 8. 18.]

제68조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·검사 면제)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, 시 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에 따라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 른 인증 유효기간(이하 "인증유효기간"이라 한다) 동안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 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8. 18., 2017. 1. 4.> [제목개정 2015. 8. 18.]